



제333회 정례회
2014. 7. 21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4년 7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14년 7월 9일

3. 제안이유

○ 청주시의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라 구 명칭 등을 일괄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현행 조례상 도 직속기관의 소재지 및 소방서의 관할구역, 복지시설 등의 위치를 통합 청주시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일괄개정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등 10개 조례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○ 동 조례안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금년 7월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함에 따라 우리 도의 각 종 조례에 명시된 종전의 행정구역명칭을 바뀐 명칭으로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임.

○ 또한,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종전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.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법률」 및 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,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」('14. 7. 1. 시행)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역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,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등 총 10개 조례에 명시된 종전의 도 직속기관 소재지 및 소방서의 관할구역, 복지시설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괄하여 개정하고,
-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「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」에 명시된 종전의 지번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 및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